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접시공 평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1. 항상 지방계약 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3.12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 하는 **직접시공 평가항목이 신설**되었고 '25.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에서는 직접시공 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정착을 위하여 관련 부처, 협회,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4. 발주기관에서는 직접시공 평가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하여 평가**하는 등 붙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5.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사감독부서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 적용 기관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재산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회계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행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 행정국장(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예산재정과장), 조달청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주무관 김성중 전문임기제 나 급 예병찬 서기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서상우
지방재정국장 전결 2024. 12. 18. 송경주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0641 (2024. 12. 18.)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4 팩스번호 044-204-8967 / idreal2013@mail.go.kr / 대국민 공개